



제417회국회(정기회)
제2차 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 병적 관리 기간 연장〉

■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257호)

2024. 8.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류 승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1. 진료기록 조회 필요성	8
2. 병적 별도관리 제도 개요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대식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4. 7. 25.
3. 회 부 일 : 2024. 7.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공직자,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및 고소득자의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병적은 현역·보충역·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같은 병적 별도관리대상자의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병역면제 또는 병역처분 변경의 원인이 된 질병 등의 치료 기록을 병역이 면제된 후에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때에도 그 질병의 치료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해당 병적을 계속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 4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가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이후에도 그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 및 병역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해당 병적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등에게 대상자의 진료과목, 진료일자 등의 진료 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77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7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제77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64조제1항제1호,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이후에도 그 질병·심신장애 등의 치료 기록을 지</u>

현행	개정안
<u><신 설></u>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자료를 공개·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병역처분된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해당 병적을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를 해제할 수 있다. ⑥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대상자의 진료과목, 진료일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 제1항, 제5항 및 제6항----- ----- ----- -----. ⑧ ----- 제7항-----

현행	개정안
정한 사항 외에 병적의 관리,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현행법상 병무청장은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병적을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현역·보충역·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가 될 때까지만 관리할 수 있으며¹⁾,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보충역,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심신장애 등의 치료 기록을 확인할 권한이 없음.

[병적 별도관리 제도 개요]

구분	내용
도입배경	○ 병역이행 여부가 관심이 되는 사람들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 ○ 병역면탈 예방 및 병역이행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제도 도입('17.9.22.)
관련법령	○ 「병역법」 제77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등) ○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4, 제155조의5

□ 최근 대형 병역 비리가 적발²⁾되면서 병역면탈 혐의자의 일부가 병적 별도관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1) 「병역법」 제77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병적에 편입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현역·보충역·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2017년 병적 별도관리 제도 시행 이후, 5년 만에 체육선수·연예인 대규모 뇌전증 관련 ‘병역면탈 발생’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전시근로역·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등의 치료 기록을 병역처분 후에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³⁾이 제기되고 있으며,

병역처분 적정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진료 이력 등을 조회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병적 별도관리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병적 별도관리 관리 대상]

구 분	관리 대상(병역법 제77조의4)
공직자와 그 자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신고의무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및 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국가대표선수와 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 중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
대중문화 예술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중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사람
고소득자와 그 자녀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및 그 자녀

□ 다만, 개정안이 달성하고자 하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에게 확인하기 위하여는 「병역법」

개정뿐만 아니라 「의료법」 개정⁴⁾ 또한 병행⁵⁾되어야 할 것으로

3) <참고자료1> 진료기록 조회 필요성 참조

4)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병역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 기록·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5) 본 「병역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강대식의원 대표발의로 「의료법」 개정안(의안번호 2202256)을 해당 상임위에 제출(2024.7.25.)하였음.

보이며,⁶⁾

현행법 ‘제65조제11항’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를 통해 병역처분이 변경되어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으므로 안 제77조의4제5항에 규정된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처분변경)이 가능한 인용 조문에 동 조문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국방부 및 병무청은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병적 및 진료기록 등을 추적 관리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질병 및 심신장애의 진위성 판단을 위해서는 약의 처방·조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에게도 관련 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조문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6) 보건복지부에서는 진료기록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병역법」 개정안의 일부 수정 및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급여항목에 대한 진료기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의 장에게 진료기록을 요청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의료법」에 별도 근거가 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정부수정의견】

개 정 안	정 부 수 정 의 견
⑥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u>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u>에게 대상자의 진료 과목, 진료일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 ----- ----- ----- ----- -----<u>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u> <u>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u>----- ----- ----- ----- -----.

문 의 처

02)6788-5307

※ 참고자료

1. 진료기록 조회 필요성

- '17년 병적 별도관리 제도 시행 이후, 5년 만에 체육선수·연예인 대규모 뇌전증 관련 '병역면탈 발생', 병적 별도관리 제도의 실효성 제고 요구
- 이번 뇌전증 병역면탈 사건에서 적발된 연예인·체육선수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는 11명*(약 8%)에 불과하나, 언론·국회·국민 등의 관심은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 집중
 - * 총 137명 중 일반인 126명,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 11명(체육선수 8명, 대중문화예술인 3명)
- '23.3.14. 병역면탈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병적 별도관리 분야 핵심 내용은 병역면제 등 처분자에 대해 3년간 사후 추적 관리 및 적정성 검증과정에 의사 참여
- 다만, 병역처분 적정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진료이력 등을 조회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병적 별도 관리제도의 실효성 낮음

【 병역처분 적정성 검증대상 및 검증 내용 】

검증 대상	• 28세 이상자 중 법 제60조, 제61조에 따라 연기한 자 • 병역처분이 변경된 자, 적정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최초 병역판정검사 4~6급 처분, 병역처분변경자(현역 → 4~6급) ☞ 병역면탈 관련 적정성 검증 인원 : 연간 1,770여명
(1차 검증) 소속기관	• 법규상 처분기준 부합 여부, 각종 제출서류 진위 여부 확인 등 • 적정성 검증 결과 전산입력 및 의심사례 확인·보고
(2차 검증) 본 청	• 1차 적정성 검증 결과 재검증, 연기제한·면탈조사 의뢰조치 등 • 일반의무자 비교 등 처분실태 분석 → 기획검증 등

- 병원 진료이력 조회 권한이 없는 추적 관리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므로, 신체등급 5~6급자 추적 관리와 원활한 병역처분 적정성 검증을 위해서는 진료이력 조회 근거 마련 필요

※국방부 및 병무청 설명 자료

2. 병적 별도관리 제도 개요

□ 도입 배경

- 병역이행 여부가 관심이 되는 사람들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
- 병역면탈 예방 및 병역이행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제도 도입('17.9.22.)

□ 관련 법령

- 「병역법」 제77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등)
-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4 및 제155조의5

□ 관리 대상

구 분	관리 대상(병역법 제77조의4)
공직자와 그 자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신고의무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및 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국가 대표선수와 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 중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
대중문화 예술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중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사람
고소득자와 그 자녀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 또는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및 그 자녀

□ 관리 인원

('24. 6. 30. 현재, 단위 : 명)

계	공직자	%	체육선수	%	대중문화 예술인	%	고소득자	%
29,970	4,477	14.9	19,812	66.1	1,531	5.1	4,150	13.9

□ 병적 별도관리 절차

